

등록번호	의회사무국-6824
등록일자	2014. 12. 23.
결재일자	2014. 12. 23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의정홍보팀장	의회사무국장
이완범	최동명	12/23 정옥진
협 조		

2015년도 기존건축물 내진보강대책



서 대 문 구
의회사무국

2015년도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대책

I 추진배경

□ 추진배정(목적)

- 『지진재해대책법』 제15조.16조 및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 계획(2011~2015)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. 추진필요
- 내진설계가 방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통한 국가주요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로 지진발생시 피해저감

□ 기본방향

-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(2011~2015)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 추
※ 내진보강대책 매년12월 31일까지 수립(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)
- 내진보강은 현재 시설물별 만족하도록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추진

II 내진보강 추진계획

□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현황

- 공공건축물: 건축물 1개소

□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

- 기본적으로 현행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을 설계기준에 요구하는 내진성능과 동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 수행
- 건축물 소요예산을 확보, 내진보강 대상.방법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안전점검사 내진성능평가 시행

